

『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8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전시장 및 회의실 분할 임대 시 사용료가 원 단위로 표시되어,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임대료를 천원 단위로 변경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주소를 “구미시 첨단기업1로 49”로 변경(안 제2조)
- 회의실 사용료를 원 단위에서 천원 단위로 변경하여 민원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(별표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고금 관리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타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- 본 「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전시장 및 회의실 분할 임대 시 사용금액이 원 단위로 표시되어,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어 임대료를 천원 단위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주소를 “산동면 봉산리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3B 1-7L”에서 “구미시 첨단기업1로 49”로 변경하고,
-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, 십원단위까지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를 천원단위로 변경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기존의 구지번을 새로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, 구미 디지털전자산업관의 전시장 및 회의실 시설 임대 사용료에 대한

세금계산서 발생시,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십원 단위 요금을 천원 단위로 정비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